

제10장 지식재산

제1절 일반 규정

제10.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제10.2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1. 양 당사국은 WTO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이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식재산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이 장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지칭하고 또한 식물 다양성 보호를 포함한다.

3. 지식재산의 보호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967)(이하 “파리 협약”이라 한다)의 제10조의2에 언급된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제10.3조 소진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소진에 대한 자국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한다.

제10.4조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 한다)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하고 이 장의 규정이 도하 선언과 무관함을 확인한다.

제2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준

제1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0.5조 부여되는 보호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1961) (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 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1971)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1996) (이하 “WCT”라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1996) (이하 "WPPT"라 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제10.6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10.7조

방송사업자

- 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된다.
- 2.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¹

¹ 이 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의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10.8조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한다. 양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정수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9조 방송 및 공중전달

1. 이 조의 목적상,

가. 방송이란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 또는 그 표현물을 공중의 수신을 위하여 무선수단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그러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도 방송이다. 그리고

나. 공중전달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방송 외의 모든 매체로 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5항의 목적상, “공중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으로 방송하고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국의 법령에 규정한다. 양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제10.5조 제1항 제1호)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국내법 사안이다.

제10.10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제10.5조부터 제10.9조까지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제한 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자국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제10.11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관련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과 제10.5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12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0 .13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 나.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²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제2판
상표

제10.14조
국제 협정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1989), 그리고
- 나. 1979년에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57)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은 사적 또는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15조

상표 보호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소리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제10.16조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0.17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2.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³로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와 유명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제 10.18 조

악의적 상표⁴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³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⁴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표가 다른 인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제10.19조

등록절차

1.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행정적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전자적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제10.20조

보호 기간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3관 지리적 표시

제10.21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2. 양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10.22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

1. 양 당사국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또는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등록에 대한 출원 또는 인정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출원 또는 요청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2. 대한민국은 자국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공표 절차를 완료한 후, 조지아가 등록한 이 협정 부속서 10-가[1-가]에 열거된 조지아의 지리적 표시를 이 관에 규정된 보호 수준에 따라 보호한다.
3. 조지아는 자국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공표 절차를 완료한 후, 대한민국이 등록한 이 협정 부속서 10-가[1-나]에 열거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를 이 관

에 규정된 보호 수준에 따라 보호한다.

4. 양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요소는 각 당사국의 법령으로 규제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0.23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

1. 부속서 10-가 [1-가] 및 [1-나]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된다.

가.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나.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⁵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이 협정은 인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영업상 전임자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결코 저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⁵ 모든 상품에 대하여, “유사상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포도주에 대하여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중류주에 대하여 중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항에 맞게 해석된다.

3. 이 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중단된 다른 쪽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0.24조 지리적 표시의 사용권

이 관에 따라 보호되는 명칭은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부속서 10-가에 언급된 제품을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10.25조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추가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양 당사국의 이익과 민감성을 고려한다.

제10.26조 상표와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직권으로 또는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등록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제10.23조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제10.22조제2항 및 제10.22조제3항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를 위한 출원일은 이 협정의 발효일이다.
3. 제10.25조에 언급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부속서 10-가에 열거되지 않은 지리

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 적용가능일은 부속서 10-가 개정의 발효일이다.

제10.27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이 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또는 조지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10.28조 보호의 집행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10.21조부터 제10.27조까지에 규정된 보호를 자국 공공 당국의 적절한 행정 조치에 의하여 집행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보호를 집행한다.

제4관 디자인

제10.29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하나의 물품 또는 물품의 일부에 대한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 최소 20년의 보호 기간 동안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

는다.

3. 각 당사국은 청구된 산업 디자인이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출원의 우선일 전에, 어떠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배포된 간행물에 기술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신규성이 있지 않음을 보장한다.

제 10.30 조

예외

각 당사국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0.31조

등록절차

1.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가. 산업디자인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디자인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 라.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출원자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등록 전 보정⁶ 또는 의견진술⁷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제10.32조 산업디자인을 위한 국제 분류 제도의 도입

각 당사국은 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과 합치하는 산업디자인 분류 제도를 사용한다.

제10.33조 비밀디자인

각 당사국은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요청서에 자신이 지정한 기간 동안, 그러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디자인을 미공개로 유지하도록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5관 특허

제10 .34조 국제 협정

⁶ 보정은 디자인 보호의 범위를 변경하나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⁷ 이 조의 목적상, "의견진술"이란 제출된 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서면 통지를 말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파리 협약 (1967)

나. 1979년에 개정되고 1984년과 2001년에 수정된 「특허협력 조약」 (1970), 그리고

다.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977)

제10.35조

특허 가능 대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⁸해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적, 치료적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⁸ 제5관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 나.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공정을 제외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제10.36조

예외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0.37조

등록절차

1.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특허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가. 특허 부여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부여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등록된 특허의 철회,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라. 철회,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에게 등록 후 보정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 전체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

제10.38조

국제 특허 분류 제도의 도입

각 당사국은 1971년 3월 24일 스트拉斯부르그에서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拉斯부르그 협정」에 합치하는 특허 분류 제도를 사용한다.

제3절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보호

제10.39조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영역에서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품¹⁰

⁹ 이 조의 목적상, “의견진술”이란 제출된 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서면 통지를 말한다.

¹⁰ 식물보호제품은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형태로 활성물질, 완화제 또는 상승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며, 다음의 용도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한다.

가. 식물 또는 식물제품을 모든 유해 유기체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러한 유기체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제품의 주요목적이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보호가 아니라 위생상의 이유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양제 외의 것으로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식물제품을 보존하는 것

라. 원하지 않는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 다만, 제품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

은 자국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적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각국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초 허가의 결과로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다.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¹¹

제10.40조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국은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의 비밀성, 비공개 및 비원용을 보장한다.

2.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시판허가 보유자가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의약품의 또 다른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법령에 보장한다.

3. 자료보호기간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이어야 할 것이다.

4. 이 조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은 의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유효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여 토양이나 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식물에는 조류는 제외한다. 또는

마. 식물의 원하지 않는 성장을 저지하거나 방지하는 것, 다만, 제품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양이나 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식물에는 조류는 제외한다.

¹¹ 이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소아과 사용을 위한 연장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10.41조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국은 식물보호제품을 각국의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유효성 요건을 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식물보호제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가, 최초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한,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밖의 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호는 이하 자료보호라 할 것이다.
3. 자료보호 기간은 각 당사국에서의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0년이어야 할 것이다.

제4절

불공정 경쟁

제10.42조

불공정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 양 당사국 각국의 법령에 따라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절
그 밖의 규정

제10.43조
식물품종

각 당사국은 식물품종의 보호를 규정하고,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을 준수한다.

제10.44조
도메인 이름

1.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ccTLD)의 도메인 이름 관리를 위한 각 당사국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관리자 정책에 따라 다음이 이용 가능하다.

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승인한 대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분쟁해결절차 또는 다음의 절차

- 1)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 2)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 3)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절차, 그리고
- 4) 사법절차 회부를 배제하지 않는 절차, 그리고

나.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정보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대중의 접근

2.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ccTLD)의 관리를 위한 각 당사국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최소한 어떠한 인이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¹²가 이용 가능하다.

제6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0.45조 일반 의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그 협정 제3부상의 각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다음의 보완적 조치, 절차 및 구제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그러한 조치, 절차 및 구제는

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한다.

나. 공정하고 공평하다.

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¹² 양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취하, 취소, 이전, 손해배상 또는 구제명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음을 양해한다.

- 라.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제10.46조 자격 있는 신청자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을 이 절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 언급된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한다.

- 가.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자
- 나.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인,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 다.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정규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 집중관리단체, 그리고
- 라.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

제1관 민사 및 행정 조치, 절차와 구제¹³

¹³ 이 관 제목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특정 조치, 절차 또는 구제를 자국의 국내 법적 제도에 따라 민사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0.47조

증거

각 당사국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48조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절차의 개시 전이라도,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곧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상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의, 견본 수집 여부를 불문 한 상세설명 또는 물리적 압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자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다른 쪽 당사자의 진술없이 취해진다.

제10.49조

정보권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가. 이 항의 “그 밖의 인” 이란 다음의 인을 말한다.
- 1) 상업적 규모로 침해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2) 상업적 규모로 침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3) 침해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된 인, 또는
 - 4)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나 서비스의 공급에 연루된 것으로 이 호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지목된 인
- 나. 정보는 적절한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의도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 2) 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획득된 정보로서, 생산, 제조, 배달, 수령 또는 주문된 양과 가격에 관한 것
2. 이 조는 다음의 그 밖의 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 1) 권리자에게 더 완전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정
 - 2) 이 조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규정
 - 3) 정보권의 오용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

- 4)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 규정, 또는
- 5) 정보원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 개인자료의 처리를 규율하는 법 규정

제10.50조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 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권리에 대한 침해혐의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속이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¹⁴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2. 중간금지명령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상거래로 유입되거나 상거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압류를 명령하기 위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3.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국은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을 위협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사법 당국이 은행계정 및 그 밖의 자산의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혐의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51조

¹⁴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국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시정조치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권리 있는 사법 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 당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는 데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가 고려된다.

제10.52조

금지명령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 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할 목적의 금지명령을 침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경우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각 당사국은 중개자¹⁵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또한 보장한다.

제10.53조

¹⁵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국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대체조치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제10.51조 또는 제10.52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책임이 있는 인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행동했다면, 문제가 되는 조치의 집행이 비례적이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면,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면,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제10.51조 또는 제10.52조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0.54조

손해배상

1. 각 당사국은 사법 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

가. 사법 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 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 가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했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국은 사법 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10.55조

법무 비용

각 당사국은 승소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무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제10.56조

사법적 결정의 공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침해자의 비용으로, 결정을 게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뚜렷한 광고를 포함하여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그 밖의 추가적인 공표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10.57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명칭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한다.

제2관

형사집행

제10.58조

형사집행의 범위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¹⁶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10.59조

법인의 책임

-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칙에 합치하게 제10.58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 그러한 책임은 그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10.60조

압수

제10.58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경우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의심상품, 위법혐의행위 수행에 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0.61조

별칙

제10.58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별칙을 규정한다.

¹⁶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국의 국제의무에 따라 정의된다.

제10.62조

몰수

- 제10.58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과 상표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몰수 및/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몰수된 상표위조 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이 폐기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는 조건하에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 각 당사국은 나아가 이 조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 당국이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3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0.63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¹⁷

¹⁷ 제10.59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간 또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하는 제공자를 말하고, 제10.60조 및 제10.61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망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양 당사국은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않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0.64조부터 제10.67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10.64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저장이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않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0.65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개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업계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¹⁸ 경우, 자신이 저 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66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¹⁸ 이 관의 목적상, “실제로 알게 된”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67조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국은, 제공자가 제10.64조부터 제10.66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행해진 불법혐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

스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무를 수립할 수 있다.

제4관 그 밖의 규정

제10.68조 국경 조치

1. 각 당사국은, 이 절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지식재산권¹⁹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 수출, 재수출, 자유지역에의 장치, 임시 절차 또는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자가 세관 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

¹⁹ 이 조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위조상품, 즉

- 1) 포장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허가없이 지니고 있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2) 가호1)목에서 언급된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되어 제시된다 할지라도, 모든 상표의 상징 (로고, 라벨, 스티커, 소책자, 사용지침 또는 보증서류), 또는
- 3) 가호1)목에서 언급된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분리되어 제시되는, 위조상품의 상표를 지닌 포장 재료

나. 각 당사국의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권리자의 동의 또는 제작국에서 권리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허락받은 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복제물이거나 복제물을 포함하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다. 세관조치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다음을 침해하는 상품

- 1) 특허
- 2) 식물 품종권
- 3) 등록 디자인, 또는
- 4) 지리적 표시

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²⁰를 채택한다.

2. 양 당사국은 세관 당국이, 자신의 조치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에 의하여 신청이 제출되거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 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 제4절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²¹에게도 또한 적용 가능하다.

제10.69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제와 보호 및 집행의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 교환, 입법 진전 상황에 대한 경험의 교환
- 나.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 다. 세관, 경찰,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중앙 및 지방 단계에서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른 나라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조품의 수출 방지 를 위한 조정

²⁰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나라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의 수입에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

²¹ 최소한 상품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처분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 인을 포함한다.

라. 역량 강화, 그리고

마. 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증진 및 전파, 소비자와 권리자의 대중인식 증진

제10.70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 각 당사국은 제1관(민사 및 행정 조치, 절차 및 구제) 및 제2관(형사집행)에 규정된 집행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제7관

IP 위원회

제10.71조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이 장의 발전을 점검하고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지식재산 사안에 대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할 방안을 논의한다.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 협정 부속서 10-가를 개정한다.

3.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²²의 결과를 알린다. 소위원회는 컨센서스로 자신의 결정을 채택한다. 소위원회는 자신의 절차 규칙을 결정한다.

²² 회의는 가상의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